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14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김태호·조승환·김종양

김성원 · 엄태영 · 박충권

서범수 · 최은석 · 박정하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증류주류는 주정, 탁주 및 맥주와 달리 종가세를 적용받아 주류 가격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산정받고 있음.

이렇듯 증류주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 및 품질의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산 증류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 허를 받은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 ~ ③ (생 략)	제8조(세율) ① ~ ③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
	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가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
	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경감할 수 있다.